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. 1. 18 선고 2022가단5928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국

피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문준홍

변 론 종 결 2022. 12. 7.

판 결 선 고 2023. 1. 18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10. 13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B에게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20. 10. 15. 접수 제209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전6830호로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수한 B에 대한 30,991,418원의 구상금 채권 및 이에 대한 2015. 7. 31.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 101,397,171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. 9. 4.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, 위 지급명령은 2015. 11. 18. 확정되었다.

나. B는 2020. 10. 15. 누나인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20. 10. 13. 증여(이하 '이 사건 증여'라 한다)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 마쳐 주었다.

다. B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.1)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에 대한 2022. 9. 16. 자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,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

1)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부상 등기원인인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, 피고는 2020. 10. 9. B에게 매매대금 10,500,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

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.

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에도 미치므로 등기부상 등기원인 일자에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, 이와 달리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,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와 B 사이의 2020.

10. 9. 자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[을

제1호증(부동산매매계약서)은 부동산중개인 등의 관여 없이 남매인 피고와 B 사이에서 작성된 것으로 위 작성일자에 실제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, 피고가 2020. 10. 9.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마련한 현금을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]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는 이 사건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.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2)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).

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누나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,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,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, 이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이다. 피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.

다. 피고의 선의 항변

피고는, B와 배다른 남매지간으로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다가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토지 및 건물의 B 지분(이 사건 각 부동산이다)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.

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므로(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다5710판결 등 참조), 수익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,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어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(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거만으로 피고가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, 만약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B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)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라. 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안금선

별지

1) 이 법원의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에 대한 2022. 9. 16. 자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B가 2019. 6.경 과세표준액 250,000원의 이륜차 1대를, 2019. 8.경 과세표준액 1,020,000원의 이륜차 1대를, 2019. 12.경 과세표준액 1,816,000원의 이륜차 1대를, 2020. 9.경 과세표준액 3,590,000원의 이륜차 1대를 각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그 과세표준액에 비추어

실질적으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만한 재산적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.